

낙태죄 폐지 논란과 생명존중을 위한 제안

국회생명존중포럼

국회의원 이 석 현

- 목 차 -

■ 들어가며

1. 낙태죄 폐지 논란
2. 낙태의 죄 (형법 269조, 270조)
3.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4.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5. 한국 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6. 국가의 책무
 - 가. 미혼모 시설 확대와 정부지원 확대
 - 나. 법률적 지원
 - 다. 낙태한 여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 라헬 프로젝트
 - (2) 희망으로 가는 길
 - (3) 낙태 여성 치유를 위한 피정

■ 참고문헌

■ 들어가며

2017년 9월 30일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되어 한 달 만에 청원 서명인 20만명(국민청원에 235,372명의 시민이 서명)을 넘으면서 우리 사회에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고, 급기야 종교계까지 이 논란에 뛰어들면서 매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는 약 19만 건이라고 하지만, 빅 데이터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 약 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론 이들 낙태는 대부분이 불법 낙태이다.

1994년 한국갤럽연구 조사에 따르면 1990년 초에는 연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하니(위키 백과 참조) 통계로 볼 때에는 낙태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낙태 건수의 감소는 2002년부터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착상까지도 방해하는 소위 응급피임약의 시판이 가져온 현상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44세까지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도 총 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 28.4%였고, 1997년 26.1%, 2000년에는 24.1%였다고 한다.¹⁾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임신한 여성의 아이도 4분의 1 가까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나 1980년대의 경우, 그 수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15세에서 44세까지 배우자가 있는 부인이 경험한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 횟수는 1978년에는 1.2회, 1985년과

1) 안형식·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연구 - 연구 계획 및 설문조사 중간발표」,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2005), 24쪽에서 재인용.

1988년에는 1.1회, 2000년에는 0.7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²⁾

갤럽이 1994년과 200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³⁾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38.6%(1994년)과 38.8%(2001년)이며, 낙태 빈도는 평균 2.0회(1994년)와 1.9회(2001)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⁴⁾ 이 분석에 따르면 낙태율은 18-29세 여성의 경우 경험자가 열 명 중 한 명꼴이었으나, 30대는 45.1%로 급상승하고, 40대의 낙태율이 58.3%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30-40대의 기혼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낙태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10-20대 여성들에게는 전체 낙태율의 10%정도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재 50-60대의 결혼한 한국 여성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혼 여성에 관한 수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그동안 행해진 낙태 횟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에서 실정법으로 낙태의 죄를 유지한다는 것이 낙태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며, 부득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낙태의 죄가 존재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은 매우 큰 것 같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낙태는 법의 그물을 피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심적·육체적 고통 또한 대단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 역시 온전한 인간 생명으로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엄연히 크게 존재

2) 같은 논문.

3) 허진재, 「피임과 낙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AD Information』(2001. 6), KOBACO, 134쪽.

4)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 선정된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488명(기혼자 1천6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2.5\%P$ 라고 한다. 같은 논문, 136쪽에서 재인용. 이는 안형식·김해중의 설문조사 수치와는 조금 다르다.

5) 이현숙,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연세의학 제12권 (2009년 12월) 제2호, 31쪽.

하고 있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건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낙태죄 폐지 논란은 이렇게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결 구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지난 2월 8일 형법 (낙태의 죄)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가 취해야 할 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의문으로 남는다.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몇몇 가능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2. 낙태죄 폐지 논란

다음은 2107년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의 글이다.⁶⁾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

6) 이 청원이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청원하지만 여기서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연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 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 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뭘니까?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야 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임법이 되고 있는 콘돔도 85%정도의 성공률이며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외의 방법들 호르몬 변화약/루프시술/임플라논 등은 98-99퍼센트로 피임 효과가 높으나 부정출혈과 감정기복, 피부여드름, 비만 등 부작용이 많은 피임 방법입니다. 배란 일 주기법도 생리주기가 정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피임법으로써 위의 방법들은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원은 한 달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 235,372 명이 서명하면서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사회 내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의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대표적으로 여성민우회를 비롯하여 여성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모두의 삶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낙태죄를 폐지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을 핑계로 공을 떠넘겨 버리는 형식적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은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라며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삶의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나 질병, 경제조건,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이런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여성에게만 그 선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 낙태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앓고 있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낙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한 배경이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무엇인지 우리 국가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는 임신중단에 대해 심판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⁷⁾

한편 기독교 시민단체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낙태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 일뿐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 Redian 2017. 11.9 참조.

다.

또한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아래와 같이 「낙태 합법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⁸⁾

낙태 합법화 반대 성명서

1. '나의 몸, 나의 선택' 이라는 슬로건에서 자궁 속 아기(배아-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팩트 오류이다. 자궁 속 아기는 엄밀히 말해서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다. 자궁 속 아기가 인간 생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인간이 된단 말인가?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주장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

2. 수정의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생긴다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초이다. 우리 사회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3. 모자보건법 제14조로 인해 이미 4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사실상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들리고 있다. 이 나라에서 낙태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이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을 상처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자유화 주장을 절대 반대한다.

8)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낙태반대운동연합/ 꽃동네 유지재단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불교 조계종 구담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프로라이프 단체들(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 가톨릭 생명관련단체들(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생명위원회)

4. 낙태를 하는 이유의 95.6%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수술 허용조항에 포함시켜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 역시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자는 말과 같다. 만약 사회경제적 사유마저 낙태 허용범위에 포함된다면 낙태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의 상황은 견잡을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5. 모든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고, 양육은 행복해야 하고, 사회적 평등은 존중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과 가정의 행복한 삶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여성과 태아, 둘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이 낙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원칙을 어기는 어떤 형태의 낙태법 개정도 반대한다.

6.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사회는 인식하기 바란다. 임신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기꺼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전폭 늘리고, 강력한 미혼부 양육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 낙태의 죄 (형법 269조, 270조)

여성이 자신의 몸에 생겨난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사회 문제로 보고 국가가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대 로마부터였다고

한다. 원래 고대 로마법에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낙태가 처벌되지 않았는데, 200년 경 세베루스 황제 시대부터 여성이 낙태를 하면 이것은 남자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범죄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사상의 영향하에 있던 중세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이었는데, 생산 수단으로서 인구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에서는 태아를 생명이 있는 태아와 생명이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전자를 낙태했을 때는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생명으로서 간주하여 낙태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며, 현재와 같은 죄의 의미를 가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고 한다.

일본 강점기 이후 일본식으로 형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였다. 1912년 일제 의용 형법에서 조선시대와는 달리 자녀를 낙태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겼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이 수용하였던 서양 법의 영향이 존재하였지만, 일제가 황국의 신민을 생산하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였던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낙태를 큰 죄로 인식하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낙태죄는 1953년 형법제정에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 초안의 낙태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회에서는 처벌론과 허용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폐지론자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임신한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옳고, 여러 번 출산 경험을 가진 부녀가 다시 임신을 하여 분만하게 되면 생활고와 함께 신체가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낙태가 국가의 형벌 대상임이 규정되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이루어졌고,⁹⁾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9) 이현숙,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연세의사학 제12권 (2009년 12월) 제2호, 34-35쪽.

1953년에 제정된 낙태의 죄는 다음과 같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3.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12년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 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은 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판결이

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관 4명 합헌, 4명 위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지만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이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고 주장하였다.

4.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청와대는 지난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이상 서명에 대한 답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상을 통해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태아 VS 여성', '전면금지 vs 전면허용'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2018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이 전한 청와대 입장은 인공임신중절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¹⁰⁾

10) Huffpost Korea 2017. 11.26 참조.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됩니다. 임신중절을 행한 여성은 물론 그것을 시술한 의사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후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서 임신중절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흡혈이 있는 경우
2.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관련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서 '임신 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 예외 조항에 본인 동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 윤리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대 합헌이 4대 4로 팽팽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 자료가 2010년 자료입니다.

추정 임신중절 검수는 169000여건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00여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또,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이 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라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어서' 등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입니다. 처벌은 더욱 희소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입니다. 임신중절 시술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이제는 '태아 VS 여성', '전면금지 VS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 나라입니다.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국은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시술까지 2~8일까지 숙려기간을 두어서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세계보건기구 연구를 인용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2000만 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그 중 6만 8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3가지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한 바처럼,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입양문화의 활성화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

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2017. 11.28) 의견서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권리 주장만 있고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우려한다. 성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다.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 낙태가 부정적 함의가 있어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낙태는 부정적이고 임신중절은 긍정적인가? 임신을 중간에 절단한다는 뜻이 긍정적으로 들리는가? 낙태의 실상을 가리기 위한 언어유희가 없기를 바란다.

-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

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방식이다.

-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하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이 약화할 것이 우려된다.

-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은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조국 수석의 발표 내용에 포함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라면 인용 언급된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교황의 발언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치 낙태에 대해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 인용의 출처를 밝힐 것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2017년 11월 27일) 아래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의 전문이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한 공개 질의

2017년 11월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국 수석은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기본 입장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마치 천주교가 작금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으리라는 착각을 갖게끔 하며,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낙태 역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아 살해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이 침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다시 밝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청와대의 발표처럼,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기다립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 질의된 천주교 측의 강력 항의는 즉시 청와대로 전달되어 그 다음날인 11월 28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이 이용훈 주교를 방문하여 해명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며 만남은 11월 29일 이루어졌다.

이날 천주교 측의 배석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와 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였으며 청와대 측에서는 조국 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청와대 측이 천주교의 낙태에 관한 입장을 경청하는 자리였으며, 천주교 측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담긴 2013년 인터뷰 내용 전문을 이탈리아어 원문과 한국말 번역문을 전달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국 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은 교황님의 발언 인용에 대해 외신의 보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천주교 측에서는 이 실수와 유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만남에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측은 이 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한국 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한국 천주교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명의로 전국 교구의 교구장들에게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내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2017. 11.28)하였으며, 며칠 후 이 서명운동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한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7년 12월 4일)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는 각 지역별로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천주교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밝힌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명의 복음」 60항)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복음」 59항 참조)
4. 낙태죄 (형법 269조1항과 270조 1항)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性)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5. 정부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받아 주십시오.

한국 천주교는 2018년 1월 31일까지 100만인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 천주교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이용훈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 국가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가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그리고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의 임신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국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이라는 명목으로 인간 생명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가는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6. 국가의 책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소통 게시판의 청원 글로 인해 재

점화된 낙태죄 폐지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에 참여해 왔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를 형법의 테두리에 묶어 여성만을 낙태 사건의 책임자이며 징벌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 부당하며, 나아가 낙태죄 폐지가 오히려 낙태를 근절하기보다는 낙태율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낙태죄 유지의 주장은 낙태죄가 폐지될 때 생명경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크게 한다. 태아의 생명권 역시 온전한 인권의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여성의 건강권이라든가 자기결정권 등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찾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더욱이 여론에 따라 인간의 생명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목적으로서가 아닌 단순히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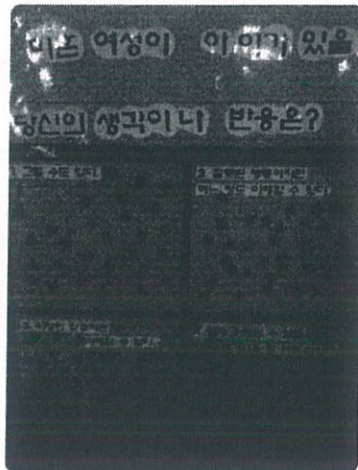
그러나 찬반 양측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국가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존중은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맡겨져 있는 공동선 실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아기의 임신 때문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국가는 낙태를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의 관심보다는 그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시각에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생명 존중과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우리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의 과열은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 때 연간 150만 건의 낙태 통계(1994년 갤럽조사 연구)는 우리 사회가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혜영 연구원은 연구 특정 사람들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은 특정 집단이 소지한 속성이나 가치, 성향 또는 외재적인 특징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집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부재 혹은 일정한 사회적 거리감을 초래함으로써, 때로는 그들의 생활기회나 권리를 직·간접으로 박탈함으로써 물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박탈감과 차별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성규범에 대한 위반과 함께 유일하게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부여해온 신성한 가족의 경계 밖에서 출생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일탈자로 낙인받고 있으며, 이러한 일탈자로서의 규정은 심리·주관적인 측면에서 미혼모들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 간 상호 작용이나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사회적 거리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억압은 곧 미혼모들의 존재를 소외시키고 결국 이들은 미혼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국회 세미나 자료집 3-4쪽 참조, 2009년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곧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미혼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국가는 미혼부모가 사회 안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상지대학교 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9)



응답 내용	응답자수
1. 그럴 수 있다.	31명 (15.34%)
2.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	39명 (19.30%)
3.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	68명 (33.66%)
4. 절대 이해할 수 없다.	64명 (31.68%)

위 표의 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각각 33.66%, 31.68%이며, 총합 65.34%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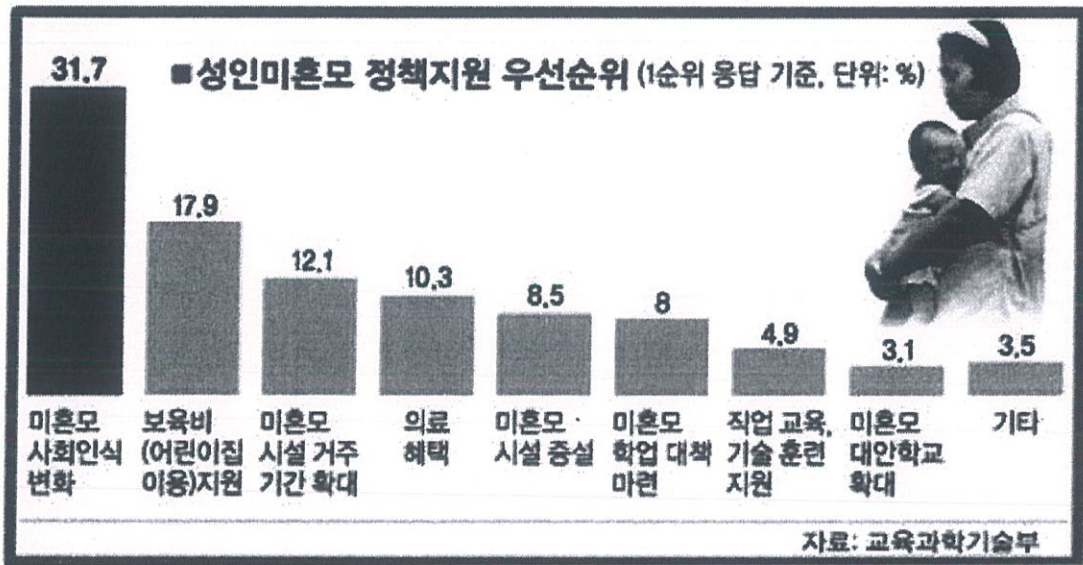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5-2007년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한다”는 비율은 3.5%로, 36개 조사대상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35위를 기록했고 10년이 지난 오늘날도 큰 변화는 없다.

가. 미혼모 시설 확대와 정부지원 확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다. 따라서 미혼모가 국민이자 여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산전 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권리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을 찾아 연결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수당 지원 즉, 생계비지원,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양육수당, 주거지원 등은 정부의 예산 부족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생계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정책으로는 미혼모의 욕구를 100%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표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31.7%가 사회인식 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변화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

2008년 8월 14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7차 여성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미혼모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첫 걸음은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미혼모 가족의 삶과 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며, 이 편견을 깨는 것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나. 법률적 지원

우리나라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이 없다. 다만 간접적 관령성이 있는 법령은 다음 몇 가지가 파악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모자가 정, 매매춘 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상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지원법> 이 있으나 이러한 법령들이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인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혼부모의 출산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입양특례법’ (2017년 9월 19일 시행)은 “입양을 위한 서류에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11조 1항의 조건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기피하고자 하는 많은 미혼모들이 결국 낙태 선택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미혼모들의 낙태에 남성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상당하며, 그 비판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곧 미혼부의 책임을 이끄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칭 ‘미혼부 책임법’의 이름으로 무엇보다도 양육의 책임을 미혼부모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처럼 양육비 미지급 남성에게 운전면허 정지, 여권 사용 정지, 벌금, 그리고 재산 압류 추심 등의 구체적인 강제 수단이 포함되어 임신에 책임이 따른 때에 이를 부모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유프로그램으로 낙태한 여성의 고백을 통한 치유 경험과 그 여정을 정리한 프로젝트이다. 필리핀의 생명운동 단체인 LEAP(삶의 질 향상과 자각 프로그램)는 가정생활에 관한 활동으로 공동체를 지도하고 생명의 논제를 다루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라헬프로젝트를 제시하여 개인, 단체 등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라헬프로그램 관련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으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 : 낙태의 경험을 가진 남녀 모두

장소 : 강화도 카푸친 공동체

비용 : 무료

(2) 희망으로 가는 길

낙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괴로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영적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대상 :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3) 낙태 여성 치유를 위한 피정

낙태로 인하여 죄책감과 아픔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마련한 피정 프로그램. 이 피정을 통하여 아기와 하느님과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도록 돕는다.

대상 : 낙태의 경험을 지닌 여성(선착순 10명)

장소 : 성 빈센트 환경마을(경기도 현리)

주관 : 착한목자수녀회